

##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

|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|
| 발의연월일 | 2015. 03. . |
| 발 의 자 | 박세진 의원 외 9명 |

#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 (박세진 의원 대표 발의)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|

발의 연월일 2015. 3. .  
발 의 자 박세진, 강승수, 권기만  
김근아, 김복자, 김태근  
안장환, 양진오, 정하영  
허 복 (10인)

### 1. 제안이유

교육부의 2014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우리시의 저학력, 비문해 성인의 문해력 증진을 통해 교육의 평등권 구현 및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거 성인 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성인”과 “문해교육” 및 “성인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”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.
- 다. 지원대상은 비문해, 저학력 성인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함(안 제3조).

- 라.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.
- 마. 성인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문해교육 계획 수립 등 시장의 임무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.
- 바.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·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(안 제6조).
- 사. 성인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(안 제7조).
- 아. 성인 문해교육기관·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경우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허용하도록 함(안 제8조).
- 자. 시장은 성인 문해교육 교사·강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이들의 연수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.

### 3. 조례안 : 붙임

### 4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「교육기본법」 제3조, 제4조, 제8조, 제10조
-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제3호, 제5조, 제9조, 제39조

##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육기본법」 제3조, 제4조, 제8조, 제10조 및 「평생교육법」 제5조, 제9조에 의거 성인 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성인(成人)"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.
2. "문해교육"이란 성인을 대상으로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문자해득(文字解得) 교육을 말한다.
3. "성인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"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 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대상) 성인 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성차별, 빈곤, 장애, 건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한 문해력을 개발하지 못한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거주하는 비문해·저학력 성인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, 성별, 직업 등을 불문한다.

제4조(기본원칙) ① 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.

② 성인 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.

③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문자해득 능력이 없는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.

제5조(시장의 임무) 시장은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1. 문해교육 계획 수립
2.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·육성
3.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
4. 문해교육 연구의 지원
5.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·지원
6.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공동추진) 시장은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7조(경비의 지원 및 관리 등)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지원금에 대하여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·감독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문해교육 지원경비를 지원받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가 지

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원한 금액을 회수 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구미시 보조금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인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공공시설의 이용) 시장은 성인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.

제9조(성인 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) 시장은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 문해교육 교사·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법령

### [교육기본법]

제3조(학습권)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,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제4조(교육의 기회균등) ① 모든 국민은 성별, 종교, 신념, 인종, 사회적 신분,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  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제8조(의무교육)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.  
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제10조(사회교육) 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.  
② 사회교육의 이수(履修)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.  
③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·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## [평생교육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4.1.28.>

1. · 2. 생략

3. "문자해득교육"(이하 "문해교육"이라 한다)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(文字解得)능력을 포함한 사회적·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.

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·시설·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.

제9조(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)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평생교육진흥의 중·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2.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
3.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
4.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, 시·도교육감 및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39조(문해교육의 실시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·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·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·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.28.>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.28.>